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수산식품부

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 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

〈표 1〉 참조

3.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	500만원
마.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20만원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통신판매를 제외한 국산 농수산물, 수입산 농수산물 등

1)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통신판매업자 및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준액(연간매출액)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억원 미만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00	1,000
20억원 이상	1,000	1,000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가) 1)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 나)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나. 통신판매 및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통신판매업자 및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2> 참조

- (1) “2차 이상 위반”이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 (2)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매출액을 산출

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 (4)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가. 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 가) 1)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 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다.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